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57
----------	-----

2015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구현 의원
- 나. 발의일자 : 2015년 6월 15일
- 다. 회부일자 : 2015년 6월 17일
- 라. 상정결과 :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년 6월 29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구현 의원)

가. 제안이유

- 다수 시민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유·무형의 근현대 문화유산은 서울의 문화 정체성 확립, 교육 및 관광자원 활용 등 보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멸실·훼손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음.
- 서울시는 2012년 이후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구상('12.6.7.)」, 「서울시 미래유산 보존 종합계획('14.10.31.)」 등 시장방침에 따라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근현대 문

화유산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는 미비한 상태임.

- 이에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발굴과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2)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3)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13조).
- (4)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5)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2) 예산조치 : 2015년 예산 16억 5천만원 기 편성
- (3) 기 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가. 조례안 개요

- 동 조례안은 서울의 문화 정체성 확립, 교육 및 관광자원 활용 등 보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멸실·훼손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발굴과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수 시민의 기억과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된 제정안임.

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 검토

- 서울시는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구상(’12.6.7.)」, 「서울시 미래유산 보존 종합계획(’14.10.31.)」 등 시장방침에 따라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기 위하여

2013년 13억 7천만원, 2014년 42억 8천만원, 2015년 16억 5천만원 등 예산을 편성하여

미래유산 조사·발굴 및 대시민 홍보, 구의취수장, 윤극영 반달 할아버지집 등 미래유산 매입·리모델링 및 운영, 민간단체의 미래유산 매입 지원 등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지방재정법」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등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개정 2014.5.28.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고 규정하고 있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은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보전재산의 보전·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에 관한 민간보조의 근거가 취약하므로 이를 조례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미래유산이 기존의 조례 체계상에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정의하는 “문화재자료”(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장이 향토 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의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반면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은 미래유산 소유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보존·관리와 본래의 기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래유산 관련 입법은 기존의 조례 체계에 편입하는 것보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다.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총 4개 장, 19개 조에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과 취소, 서울 미래유산의 관리·운영, 행·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체계>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2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3장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	제4장 미래유산의 선정 및 관리
목적	기본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설치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정의	시행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구성	서울 미래유산의 취소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		위원장	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
시장의 책무		회의	기록 및 홍보
		분과위원회의 운영	행·재정적 지원
		위원의 해촉	시행규칙
		수당과 여비	

라. 주요 조문별 검토

(1) 정의 규정

- 제정안은 근현대 문화유산 중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미래유산”으로, 그 중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선정 동의를 받은 미래유산을 “서울 미래유산”으로 각각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 및 활용,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과 취소, 인증서 및 표식 발급, 기록 및 홍보 등으로 나누어 조문을 구성하고 있음.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미래유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안 제15조에서 이미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이라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경우 서울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제정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제정안 정의 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2. “서울 미래유산”이란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 원칙 및 책무 규정

-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국민의 협조 의무 등 문화재의 관리를 위한 규제 위주의 법인 반면

동 제정안은 다수 시민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건축물과 예술작품, 전통을 이어온 근린시설, 마을, 시장 등 아직 시민이 실제 생활에 사용하며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미래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며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미래유산 소유자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원칙 및 책무 규정 비교>

제정안	문화재보호법
제3조(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관리 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

- 제정안 제3장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장, 제10조 회의, 제11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3조 수당과 여비 등 8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기본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장 문화재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였음.

다만, 문화재위원회의 경우 문화재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 문화재 관련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는데 반해, 미래유산보존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는데 미래유산보존위원회는 문화예술, 산업노동, 정치역사, 도시관리, 시민생활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문화재위원회에는 5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미래유산보존위원회에는 전문위원제도가 없는 점 등이 차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문화재와 미래유산의 개념,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원칙과 제도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 비교>

제정안	문화재보호법
<p>제7조(위원회의 설치) ② 문화예술·산업노동·정치역사·도시관리·시민생활 등 분야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 위원회를 둔다.</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전문위원 제도 없음)</p> <p>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42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제4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p>제45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5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제48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4)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 규정

- 제정안은 누구나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유산보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고 해당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이 선정에 동의한 경우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고

반대로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이 선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해당 미래유산의 문화재적 가치가 커져서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경우를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였는데

문화재는 아니지만 다수 시민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보존·관리 및 활용한다는 미래유산제도의 취지에 충실한 선정 및 취소 규정이라 판단됨. 다만, 안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은 “제14조제2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 규정>

제14조(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제15조(서울 미래유산의 취소)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5) 재정부담 수반 규정

- 서울시는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구상(’12.6.7.)」, 「서울시 미래유산 보전 종합계획(’14.10.31.)」 등 시장방침에 따라 2013년 13억 7천만원, 2014년 42억 8천만원, 2015년 16억 5천만원 등 예산을 편성하여

미래유산 조사·발굴 및 대시민 홍보, 구의취수장, 윤극영 반달 할아버지집 등 미래유산 매입·리모델링 및 운영, 민간단체의 미래유산 매입 지원 등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5년 예산의 세부내역은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운영, 미래유산 조사 및 발굴 등” 3억 8천5백만원, “대시민 홍보” 2억원, “민간단체 공모사업 지원” 2억원, “미래유산 매입 및 활용” 3억원, “미래유산 매입 지원” 5억원, “윤극영 반달 할아버지집 운영” 5천만원 등인데

제정안이 시장방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재정지출 근거를 규정한 것일 뿐 재정지출의 항목을 추가한 것은 아니지만,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정안 재정부담 수반 규정>

제16조(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기록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기타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18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 부칙 규정

- 제정안은 부칙으로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등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이는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구상('12.6.7.)」, 「서울시 미래유산 보전 종합계획('14.10.31.)」 등 시장방침에 따라 선정된 기존의 서울 미래유산과 운영 중인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이 조례에 의해 선정되고 운영 중인 것으로 인정하는 입법조치로

현재 선정되어 운영 중인 서울 미래유산에 대해 제안, 심의 및 동의 등 절차를 다시 밟고, 현재 운영 중인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을 다시 하는 비효율을 막고

서울시가 의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된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에 대한 조례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됨.

<제정안 부칙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근현대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구상」 등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마. 종합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는 아니지만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다수 시민의 기억과 감성이 깃들여 있어 미래세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발굴, 보존·관리 및 활용하고자 하는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의 취지에 충실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를 포함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이 매년 10억원 규모로 예상될 뿐 아니라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의 효과를 달성하는 데에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인 만큼

조례 시행 과정에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최대한의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안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은 조항 인용의 착오이므로 “제14조제2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조항 인용의 착오 보완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57
----------	--------

제안연월일 : 2015년 7월 10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 중 조항 인용의 착오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수정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서울 미래유산의 취소) 시장은 <u>제14조 제1항</u> 에 따라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서울 미래유산의 취소) ----- <u>제14조 제2항</u> ----- -----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2. “서울 미래유산”이란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문화예술·산업노동·정치역사·도시관리·시민생활 등 분야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③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위원장 선임 등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미래유산의 선정 및 관리

제14조(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제15조(서울 미래유산의 취소)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기록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기타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18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인증서 및 표식 발급, 취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구상」 등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